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467호)

심사보고서

1998. 3.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3. 13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1998. 3. 16

다. 상정·의결일자 : 1998. 3. 16

상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이 개정('97.8.30. 법률 제5404호)되고, 동법시행령 전문이 개정('98.2.24 대통령령 제15662호)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도의 1000분의 2의 해당금액과 그 기금의 운용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함.
(안 제2조)

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고성군금고에 계좌설치로 예치관리토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중 기금의 지원범위를 제한하고 지역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응자코자 할 경우는 민간소유시설 등의 재난발생 위협이 있고 소유자·관리자의 경제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재난관리법 제56조(개정 '97.8.30 법률 제5404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전문개정 '98.2.24 대통령령 제15662호) 상위법과 경남도의 준칙근거에 의한 제정안으로
- 재난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 부수적으로 본 조례제정 이전의 재난발생 빈도, 재원확보 지원상황 등에 대한 이해와 향후 본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재난대비에 적정 가능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재난발생시 지원범위와 기금확보액은
● 답 : 안 제5조제1항은 지원대상이며, 안 제5조제2항은 용자대상임.
기금확보액은 '98년 예산에 16,170천원임.
- 문 :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할 의향은
● 답 :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점차 개정조치 하겠음.

6. 토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8. 3.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